

2025년 우수농식품신선도제고(CA유통지원) 사업 모집공고

신선농산물의 수확 후 저장·운송 등 수출물류에서 CA기술을 활용하여 신선도 향상을 통한 농산물 폐기물량 감축 및 품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「2025년 우수농식품신선도제고(CA유통지원)」 사업 참여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,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5년 3월 26일

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

1

사업개요

- 지원규모 : 6개 업체 내외(예산소진 시 접수 마감)
- 사업기간 : 약정일로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
- 지원대상 : 전년도 수출실적이 무역통계진흥원(Trass) 선적일 기준 미화 10만불 이상이며, 부지확보 등 시설 구축 준비가 완료된 자
 - * 수출실적은 제조자 또는 수출대행자 실적 중 수치가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함
 - *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자 소유 토지 건축물대장, 등기부등본 등 모두 구비되어 있는 경우 한하여 인정
 - * 국가,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타 기관 소유 또는 자회사, 자회사 등 간접 소유한 부지 활용 시 인정불가
- 지원내용 : ① CA저장고 구축, ② CA질소발생기 구축 지원
 - 사업신청 시 제출하는 설계도서 및 원가계산검증 결과보고서 등 서류 발급비용, 배정금액 초과분과 지원항목 구축 이외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, 인·허가비*, 세금 및 공과금, 운영비 및 유지비 등은 자부담
 - * 구축 전후 지적, 건축물, 등기 등 부동산 공부 관련 사항, 행정관청 인허가, 구조안전진단 및 토질조사보고서 등 발급사항 및 기타 승인사항 발생시 자체 책임으로 해결
- 지원비율 : 국고보조 70%(부가세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)
- 문의처 : aT 신선수출지원부(061-931-0836)

□ 신청기간 : 공고일 ~ * 예산규모에 따라 조기마감 또는 연장 가능

□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: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 상 아래의 서류 업로드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. 신청업체 공통 제출자료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[서식 1, 2] ② 사업자등록증 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[서식 3] ④ 구축 예정 부지의 대장(토지 및 건축물) ⑤ 구축 예정 부지의 등기부등본(토지 및 건축물) ⑥ 구축 예정 부지의 건축물현황도 ⑦ 표준재무제표증명원(최근 2개년) ⑧ 무역통계정보제공 동의서(기 제출 시 제외) ⑨ 총괄집계표 [서식 4] ⑩ 공사(설치)원가계산서 [서식 5] ⑪ 공정별 집계표 [서식 6] ⑫ 공정별 내역서 [서식 7] ⑬ 일위대가 목록 [서식 8] ⑭ 일위대가표 [서식 9] ⑮ 수량산출표 [서식 10] ⑯ 단가조사표 [서식 11] ⑰ 기타 aT에서 요구하는 자료 <p>* ⑨~⑯까지는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작성된 것에 한하며, 공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검증을 받은 것이어야 함</p> <p>* 신축 시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은 제외</p>		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. 지원항목별 추가 제출자료</p>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body> <tr> <td style="width: 15%; 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CA저장고 + 질소발생기 구축시</td> <td style="padding-left: 10px;"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시공업체별 견적서 각 1부 ② 설비구축계획서(현장사진 포함) 1부 [서식 12] ③ 건축사 자격을 갖춘 자가 작성한 설계도서(건축 계획 도면, 구조 계획 도면, 설비 계획 도면, 토목 계획 도면, 흡기 질소흐름도 및 배관 질소흐름도, 공사원가계산서, 시방서, 수량산출서 등) ④ 상주 감리원 선임계 각 1부 [서식 13] ⑤ 기타 aT에서 요구하는 자료 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질소발생기 구축시</td> <td style="padding-left: 10px;"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시공업체별 견적서 각 1부 ② 설비구축계획서(현장사진 및 설비 제원 일체 포함) 1부 [서식 12] ③ 기타 aT에서 요구하는 자료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CA저장고 + 질소발생기 구축시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시공업체별 견적서 각 1부 ② 설비구축계획서(현장사진 포함) 1부 [서식 12] ③ 건축사 자격을 갖춘 자가 작성한 설계도서(건축 계획 도면, 구조 계획 도면, 설비 계획 도면, 토목 계획 도면, 흡기 질소흐름도 및 배관 질소흐름도, 공사원가계산서, 시방서, 수량산출서 등) ④ 상주 감리원 선임계 각 1부 [서식 13] ⑤ 기타 aT에서 요구하는 자료 	질소발생기 구축시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시공업체별 견적서 각 1부 ② 설비구축계획서(현장사진 및 설비 제원 일체 포함) 1부 [서식 12] ③ 기타 aT에서 요구하는 자료
CA저장고 + 질소발생기 구축시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시공업체별 견적서 각 1부 ② 설비구축계획서(현장사진 포함) 1부 [서식 12] ③ 건축사 자격을 갖춘 자가 작성한 설계도서(건축 계획 도면, 구조 계획 도면, 설비 계획 도면, 토목 계획 도면, 흡기 질소흐름도 및 배관 질소흐름도, 공사원가계산서, 시방서, 수량산출서 등) ④ 상주 감리원 선임계 각 1부 [서식 13] ⑤ 기타 aT에서 요구하는 자료 				
질소발생기 구축시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시공업체별 견적서 각 1부 ② 설비구축계획서(현장사진 및 설비 제원 일체 포함) 1부 [서식 12] ③ 기타 aT에서 요구하는 자료 				

* 무역통계동의서 제출방법 : global.at.or.kr → 자주찾는 서비스 → '무역통계제공동의서제출'
→ 사업자번호 10자리 입력 → 사업자 공동인증서로 온라인 제출 동의

3

선정방법

- 선정방법 : 1차 서류평가, 2차 현장평가 후 합산하여 **고득점 순으로 선정**하며, 선정 시 배정한도, 면적, 장소 등 결정
 - 기 선정업체도 지원 가능하나, **신규업체 우선 선정** 후 사업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 선정업체도 선정 가능
 - * 경합 시 사업신청금액이 많은 업체, 2차평가 고득점, 1차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
 - (가점항목) 농산물, 식품 안전과 시설 관련 인증 보유 및 창고 관리 전담인력 보유시 서류평가 단계에서 **최대 5점 이내에서 가점 부여**
 - * (관련 인증) HACCP, GAP, FSSC22000, ISO45001
 - * (전담 인력) 공조냉동기계 기능사·산업기사·기사 보유자
- 결과발표 :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(<http://global.at.or.kr>)
 - * 확인 방법 :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로그인 → 마이페이지 → 사업 신청관리

4

정산방법 및 제출서류

- 정산방법 : 기한 내 지원항목 구축증빙 및 수출이행 증빙 제출 후 검토 결과에 따라 항목별 한도 내 지원(先지출, 後정산)
 - * 원본대조필 날인 후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 상 기한 내 업로드
- 사업의무 : ①7월까지 지원항목 구축완료, ②11월까지 구축 완료 지원항목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규격 및 품목, 물량 무관 CA컨테이너 2대 이상 수출
- 정산요건 : ①지원항목 구축 확인 후(구축이행) 정산인정금액의 70%를 먼저 정산하며, ②지원항목 활용 수출 확인 후(수출이행) 잔여 30% 정산
- 정산신청기한 : ①구축이행 : '25.8월까지, ②수출이행 : '25.12.10까지

- 정산인정금액 : 배정한도 이내에서 지원항목 구축 시 실제 지출금액과 원가계산용역기관 등 전문 기관에서 산출한 금액 중 적은금액(공급가액 기준)
- 구축이행 후 정산(70%) 위하여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증권(보험기간 : 정산신청일 ~ 사업기간종료일까지)을 aT에 제출하여야 하며, 추후 CA수출의무 미이행 시 잔여분 미지급(30%) 및 사업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청구 절차 진행
- * 국세징수법 107조(납세증명서의 제출)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(보험료등의 완납 증명)에 따라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, 4대보험 완납증명서 미제출 시 국고보조금 정산 불가
- * 10년간 사후관리가 필요하고, 고장 등 발생 시 효율적인 시설·설비 관리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시공업체 원격조정 서비스를 포함한 A/S 기간은 최소 3년 이상, 시공업체 수를 1~2곳으로 최소화 할 것을 권장

□ 정산기준 및 제출서류 : 추후 별도 안내

5

정산보고 및 중요재산 등록

□ 정산보고 : 사업비(보조금)를 1억원 이상 수령하는 업체는 외부감사법 등에 따른 감사인 자격이 있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사업비 정산 검증 확인을 받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(별도서식) 및 검증 보고서를 약정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aT로 제출

* 근거법령 :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(정산보고서의 검증)

□ 사후관리 : 지원항목 구축일로부터 10년간 사후관리 필요하며, aT 관할 지역본부에서 반기별 1회(연 2회) 사후관리 실시

- 농식품부 또는 aT 사전 승인 없이 사후관리 기간 내 용도의 사용,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, 폐기 등을 금지하며,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
-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및 종물과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·장비(중요재산)를 보조금통합관리망(e-나라도움)에 중요재산으로 신규 등록(aT 수행)하기 위하여 협약서(별도 서식)와 중요재산 관리 장부(별도 서식) 등 서류를 정산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

* 근거법령 :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60조(중요재산의 등록 등)

- 지원항목 구축 시 농림축산식품 사업 안내 표지판을 동판, 아크릴판 등 쉽게 지워지지 않는 소재를 활용하여 탈착되지 않는 방식으로 견고히 부착하며, 관리기관 및 보조사업명과 보조사업자, 시설규모, 재원, 사업비, 사후관리기간 등 명시

〈 농림축산식품 사업 안내문 〉

본 시설은 20△△년에 농림축산식품부 및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간인 20△△.△월 △일까지는 보조금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의 사용,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의 제공, 폐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1. 사 업 명 :
 2. 사 업 자 : (대표 △△△)
 3. 시 설 규 모 :
 4. 재 원 :
 5. 총 사 업 비 : (부가세 제외)
 6. 사후관리기간 : ~
 20△△.△월 △일

6 문의처

□ 문의처 : aT신선수출지원부 (061-931-0836, jmk@at.or.kr)